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4호로 2021년 10월 8일 유승용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2조)
- 나. 예산 계상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안 제4조)
-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시 (안 제5조)
- 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등 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8조 ~ 제17조)
- 사.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0. 7. ~ 10.12. /6일 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9개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종전에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사업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 내용, 접수 기간, 재공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2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 외에 제4호에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등 4가지의 사유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현황 보고와 공시,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으나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 제11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였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 등 투자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 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한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기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던 것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

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